

#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96호)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4. 24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1. 4. 2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1. 5. 2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 2. 제안이유

-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와 관련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범위 및 융자심의 위원회설치 등 기금운용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특별회계의 세입의 재원 및 세출의 대상기준 표기(안 제5조의 1, 2)
- 나.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설치 신설(안 제9조의 1)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기히 조성된 기금을 지난해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200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을 올해 처음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98년도에 제정한 동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내용 중 융자대상자 선정 등을 실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의 구성원 대부분이 금융, 기금 등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지원대상 적격자 선정 등 심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계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였으며,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운영지침에 의하면 위원회의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조정위원회로 대체하라는 지시사항에 역행하는 사항이 아닌지 검토가 요망되며,
- 또한 경영 안정사업의 대출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자금 부족 등으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지 않는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 5. 질의 및 답변

- 문 : 군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도 새로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 답 : 군정조정위원회는 구성원이 실과 장으로 편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심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 편성함으로써 심의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임.
- 문 : 경영안정사업의 대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이유는
- 답 : 도와 중앙의 경영안정사업 및 시설현대화 자금의 대출기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임.

## 6. 토 론 : 없음

## 7. 심사결과

- 2001. 5. 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